



## 제 4 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본회의 합의문

2040, 청년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

2019.08.15~17, 경기도 양평

## 토론위원

강다혜 고예린 곽민주 곽정연 권다빛 권병규  
김다혜 김동영 김민석 김민혁 김보현 김세진  
김소정 김수림 김수진 김영서 김종호 김혜성  
김혜원 민승희 민진성 박기범 박성미 박지윤  
박찬주 배수현 소가희 송민석 송연주 신현지  
심시은 심진성 안수환 안웅 안혜진 윤찬혁  
이미르 이민윤 이민지 이병주 이새해 이승엽  
이승훈 이유희 이정훈 이지수 이호순 임동민  
임승건 임재우 임정은 장서영 전민경 정다니엘  
정채린 정현수 조보근 조성근 조윤진 조윤찬  
최성민 한고은 허미루

## 전체회의 상정안

2040, 청년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

이 문서를 제4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본회의 최종 독트린으로  
상정함

2019년 8월 17일

강다혜 외 62인

의 장 정 우 진

부의장 전 하 란

부의장 이 수 빈

---

## 최종 표결 결과

재적 토론위원 63 인

찬성	53
반대	4
기권	6

## 가결

한반도정책컨센서스와 아주통일연구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대한민국 통일부가 후원한 제 4 회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본회의에서 강다혜 외 62 인은 합리적인 규칙에 입각하여 안전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남갈등을 비롯한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관하여

1. 남남갈등이란 대한민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이념갈등과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남갈등이 대북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남갈등을 해결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남남갈등의 간극을 좁히고자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2.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 (ex.공론장)을 기반으로 통일에 관해 세대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이를 통해 국민 차원에서 대북정책 의제를 합의하고, 합의된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자극적인 언론보도, 허위 유포(예: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2.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에 관하여

1. 남북 간 분단이 만든 사회 단절은 통일 전후의 남북사회의 갈등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용이 중요한 바, 해당 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충 및 법무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된 관할권을 일원화한다.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극비(기밀)사항을 제외한 정보의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통일이 경제적 결실을 맺기 위해 단계적인 경제통합을 진행한다. 남북 공동 스타트업 및 투자와 같은 남북 간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한다.
5. 통합과정에서의 불가피한 통일세 부과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한다.
6. 분단체제가 낳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7. 각 분야(기업, 정부 및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제고한다.

### 3.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1. 현행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은 양국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서, 한반도 안보 동향 파악,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에 기여하는 바, 이를 지속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노력을 기울인다.
2. GSOMIA 는 군사정보교류 목적 외에도 한·미·일 삼각공조의 핵심 연결고리로 그 상징성이 크기에, 궁극적으로 3 국 간 안보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다만 한국은 GSOMIA 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군 정찰위성 보유, 고고도정찰기 도입, 휴민트 확대 등을 통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본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한일 양국은 GSOMIA 를 추진함에 있어 향후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중장기적 군사안보전략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정책 결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 4.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1. 한국은 자주국가로서 동북아 역내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2.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국 및 동북아 내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북한의 비핵화 명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4. 공격 무기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인한 사회·문화·경제적 국익손해는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손해보다 더욱 클 것이다.
5. 동북아 역내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군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과도한 안보비용청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역내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의 요구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도 해당 이슈에 한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요할 시,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등을 요구하며, 상호안보이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5.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교육 운영의 중점 방향 중 하나로 채택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1. 통일교육이란 민주적 신념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기르는 교육을 뜻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교육 운영의 중점 방향 중 하나로 채택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현 수준의 통일교육 교재 및 자료에 있어서 북한 인권 교육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충분한 북한 인권 교육을 통일교육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2-1. 통일교육 내에서의 인권 문제는 다른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제와 같이 독립적인 단원의 비중을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은 인권의 정의,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 선언들, 북한 인권 실태, 정부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비전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2018 북한 이해"와 "2019 북한 이해"는 인권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20~40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는 것에 반해 인권 문제에는 단 세 페이지만을 할애하고 있고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권의 정의와 국제사회에서의 노력만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3. 통일교육 내 북한 인권 교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한 자에 한하여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도록 한다.

4. 통일교육 내 북한 인권 교육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 6. 제 3 국 출생 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1.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며 제 3 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을 제 3 국 출생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제 3 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대상자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 출생지가 제 3 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교육과 취업 지원,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3.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적응이 필요한 존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다.
4. 지원 대책의 방향은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구분되는 제 3 국 출생 청소년의 법적 제도의 보완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제 3 국 출생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5.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를 준용하여 제 3 국 출생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와 별개로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둘째, 각 지역별 하나센터 언어 교육 지원, 기초 학력 지원 및 지역 통합 사업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 대상의 구분, 기관 내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천안드림학교, 여명학교 등 관련 민간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하나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공조를 통해 제 3 국 출생 청소년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인다.

## 7. 지금까지의 남북 민간교류 현황을 점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1. 과거 남북 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었고, 그래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지녔다.
2. 정부 주도 하의 제한적인 교류가 아닌 민간이 교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 남북한 문화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상호 개방 협약을 단계적으로 맺어야 한다.
3. 남과 북의 문화 수용을 저해하지 않는 기초적인 특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단,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기반한 여론 수렴을 전제로 한다.
4. 양자 간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문화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지원 사업과 같은 방안으로 새로운 한반도 문화의 창출과 개방적 통일의 과정을 모색한다.

## 8. 남북의 청소년들이 주가 되어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1.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도 주가 되어 남북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남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2. 우리말 겨루기, 도전 골든벨(북한의 "알아맞히기 경연"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술적 TV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단, 남북심의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주제를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초반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도한다.
3. 남북 청소년 교류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남북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4. 각 시도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남북 접경 지역에서 남북 청소년들의 공동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 남북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 또는 유산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 9. '남북 접경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1. 남북접경위원회(이하 접경위)의 설치는 남북접경지역의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접경위의 설치는 남북 간의 신뢰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상호호혜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접경위 설치 시, 남북 주민의 안전, 삶의 질과 공동의 자연 보호를 고려하여 단계적 계획을 따른다. 초기에는 감염병 및 기타 재난 대응, 생태계 보전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향후 남북공동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3. 접경위는 남한과 북한이 주축이 되는 합의기구이다. 아울러 양측은 접경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한다.